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8일, 조인철의원 등 17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인철의원)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를 수립했음. 이를 위해 미래차 3강전략 수립('22.9월), 미래차 분야 국가전략기술 지정('23.5월), 미래차법 제정('23.12월) 등 미래차 전환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은 전체 차량 대비 2.3% 수준(누적기준, 약 60만대)에 불과하며, '24년 상반기 신차판매 기준으로 8.2%(약 6만7000대)로 본격적인 보급 활성화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임. 더군다나, '24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16.5% 감소, 수소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38.7% 감소를 기록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까지 일몰될 경우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 지연 및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 위축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부정적 영향 끼칠 우려가 매우 큼.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6 조제3항 및 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66조제3항)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부가 2021년 2월에 발표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자동차의 총 수명(연료생산, 배터리제조, 주행)을 고려하면 하이브리드자동차도 전기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실현 가능한 것을 근거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병행보급 필요성을 제시함. 동 계획에서는 정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 목표를 2025년 283만대(신차 판매 51%), 2030년 785만대(신차판매 83%)로 설정함.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현황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약 188만대가 등록되었음.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의 2025년 목표가 150만대를 이미 달성함.

개정안을 통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함으로써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에서 2030년 목표로 설정한 400만대를 달성하고,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감면규모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별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8년까지 4년간 총 1조 1,580억원(연평균 2,52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2)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66조제4항)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부가 2021년 2월에 발표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전기차의 보급 목표를 2025년 113만대, 2030년 300만대로 정하고 있고, 수소차의 보급 목표를 2025년 20만대, 2030년 85만대로 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현황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전기차는 약 65만대이고, 수소차는 약 4만대임.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의 2025년 목표인 113만대와 20만대를 2024년 9월 기준으로 달성하지는 못함.

개정안을 통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함으로써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의 2025년 및 2030년 목표로 설정한 대수를 달성하고,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감면규모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연장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및 수소차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24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을 공고한 대수는 전기자동차 134,490대(전기승용차 95,592대, 전기화물차 37,000대, 전기승합차 1,898대)와 수소자동차 6,849대임. 전기자동차 대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50만원에서 1,1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수소자동차에 대해서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전기·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8년까지 4년간 총 2조 385억원(연평균 5,09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